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903
----------	-----

2009년 6월 25일
환경수자원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6월 11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
(2009년 6월 25일 상정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: 맑은환경본부장 김 기 춘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은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음.

나. 주요골자

- 이번에 상정된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」은
 -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하였으며, 서울특별시교육감,

자치구청장 등에게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소관업무 반영 및 추진 실적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관련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과 협의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또한,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의 체계적·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.

○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은

- 2009.4.15 행정규제 여부 사전심사 결과 ‘행정규제 심사대상이 아니다’ 라고 통보 받았으며,
- 2009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제출된 의견은 조례안에 반영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체계적인 환경교육 추진을 통하여 서울시의 환경교육이 활성화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청수)

-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환경권 보장 및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매5년 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하고,

- 서울특별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,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.

가. 조례안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환경문제의 근본적·예방적 해결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사회환경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상위법인 「환경교육진흥법」과 「서울특별시 환경기본조례」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기본취지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.

나. 제1조(목적)~제2조(책무)

- 본 조례의 목적과 각 주체(서울특별시, 자치구청장, 사업자, 시민)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또 다른 교육주체인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책무¹⁾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다. 환경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(안 제3조~제5조)

- 서울특별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여 매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, 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고 있으며, 관련 예산의 확보를 의무화 하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교육관련 분과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1)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르면, "도교육감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.

- 그러나 큰 틀로서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은 매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,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의 수립·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.
- 한편,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는 환경교육관련 분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바, 현재의 「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 운영조례」에 따르면 교육관련 분과위원회는 「서울의제21 실천협의회」로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례개정 등의 보완이 필요할 것임.

라. 학교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,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
(안 제6조~제8조)

-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(안 제6조)과 사회환경교육과 사업자 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(안 제7조~제8조)으로 이견이 없음.

마.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과 교육위탁(제9조~10조)

- 「환경교육진흥법」에 따르면, 시·도지사는 지역환경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²⁾할 수 있으며, 본 조례안에서는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외에도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, 서울시의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.
- 그러나 서울시와 같은 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이외에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추가로 설치 또는 지정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몇 개소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.

2)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(환경교육센터의 지정)

- 서울시에서는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서울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매년 지원협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, 사업범위³⁾로 기술개발은 물론 지역주민에 대한 환경보전 및 환경정책의 홍보·교육 등 환경의식 제고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 중복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할 것임.

바.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관련

- 본 조례안에서는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지 않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교육관련분과의 자문만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.
- 이것은 유명무실한 위원회 설치를 지양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, 교육청이나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한 환경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⁴⁾가 필요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

3) 「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6호

4) 「환경교육진흥법」이나 「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교육진흥조례」에서는 **환경교육진흥위원회**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4조, 「서울특별시 환경기본 조례」 제27조

나. 협의 : 예산담당관과 협의됨

다. 기타사항

(1) 입법예고(2009.3.19.~2009. 4. 8)결과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(2009. 4. 7.) :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, 지역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예산지원 의무규정을 감사담당관의 개선권고안에 따라 “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”로 수정하여 개정안에 반영함.

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시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시민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치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할 책무를 진다.

② 자치구청장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환경교육 시책에 따라 자치구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 및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3조(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
 2.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
 3.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 등 활성화 방안
 4.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
 5. 환경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
 6. 종합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
 7.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시장이 제1항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, 자치구청장 등과 협의하고 「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에서 정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교육 관련 분과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시장은 제1항의 종합계획을 확정된 후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4조(종합계획의 시행) ① 시장은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에게 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, 자치구청장 등이 제출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·분석 등을 의뢰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.

제5조(환경교육에 관한 자문)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1.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

2. 환경교육 시책의 조정
3.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환경교육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련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
제6조(학교환경교육의 지원) 시장이 교육감과 협의하여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
2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
3. 환경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
4.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5.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
6.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
7.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
8.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)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2. 공공기관,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
3.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
4.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
5.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
6.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- 제8조(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)** ①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,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.

- 제9조(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)** ① 시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.
- ②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
 2. 환경교육 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
 3.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
 4. 환경교육 수요조사 총괄
 5. 프로그램 및 교재, 교구의 개발 및 보급
 6. 환경도서관 운영
 7.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
 8. 지역환경교육센터의 통합 관리
- ③ 지역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
 2.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, 프로그램, 교재 및 교구 보급
 3. 지역의 민간단체, 구청, 학교,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·조정
 4.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공유
-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

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경우에는 「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조의 환경교육센터 등의 세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시장은 제5항의 세부지정요건 등을 검토한 후,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.

제10조(환경교육의 위탁 등)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의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와 지역환경교육센터에게 환경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1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환경교육센터,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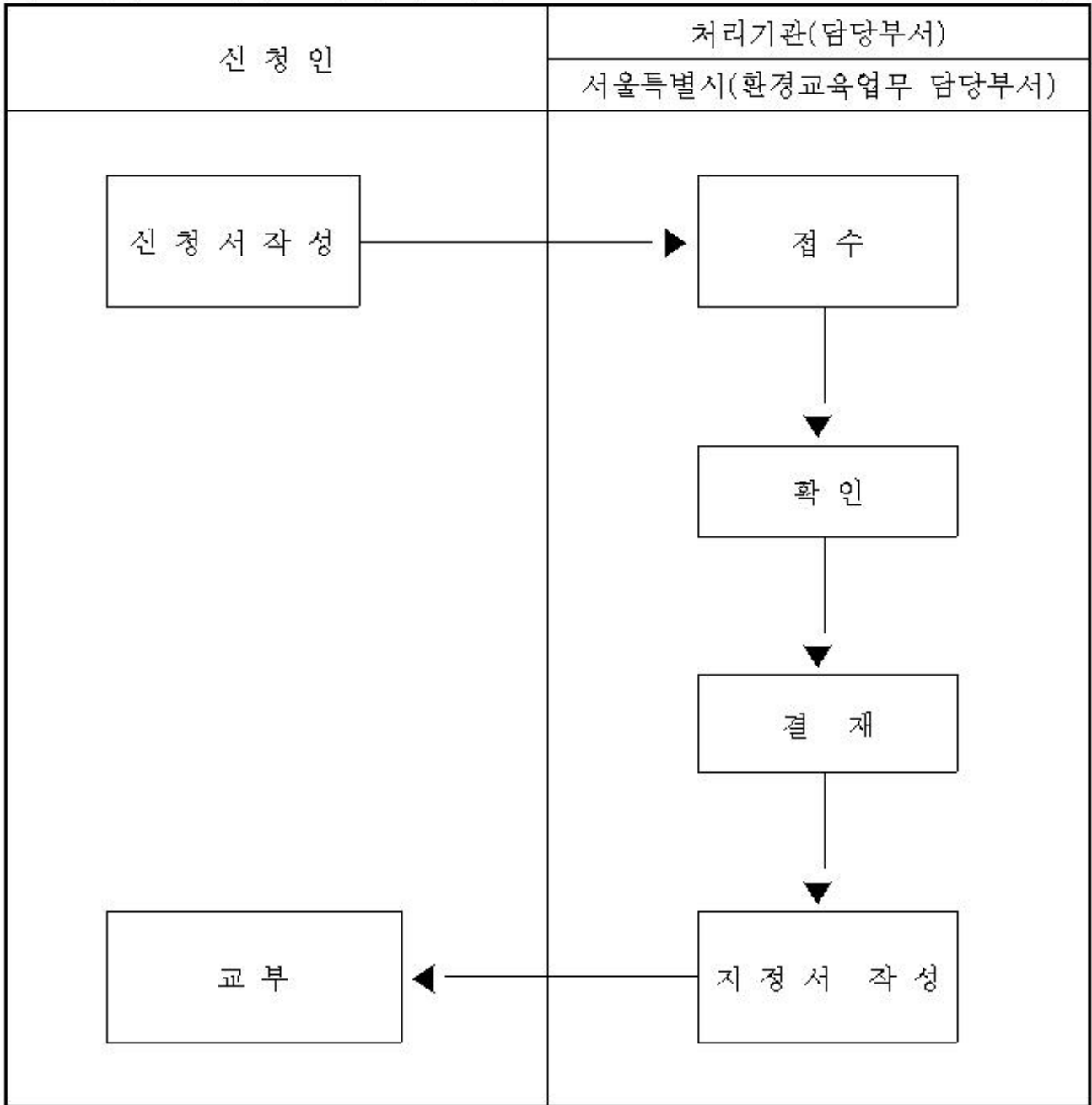
② 시장은 그 밖의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·단체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

[별지 제2호서식]

지정번호	(지역)환경교육센터 지정서
제 호	
1. 환경교육센터의 명칭	
2. 대 표 자	
3. 소 재 지	
<p>「환경교육진흥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및 「서울특별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위 기관을 ○○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장 (직인)</p>	

210mm×297mm[보존용지(1종) 120g/㎡]

입법예고결과 요약서
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<p>감사담당관 (부패영향 평가)</p>	<p>○ 제12조제1항 개선권고</p> <p>- 제12조(재정지원 등) ① “~ 예산을 지원토록 한다.→ 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 로 개선권고</p>	<p>○ 반영</p> <p>- 제11조(재정지원 등) ① “~ 예산을 지원토록 한다.→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”</p>
<p>서울특별시 교육청</p>	<p>○ 제4조제1항 수정요구</p> <p>- 시 교육감은 종합계획을 반영하고 추진실적의 통보 및 평가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4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의 시교육감을 삭제하고 시 교육감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추가한다.</p> <p>○ 제7조①항 수정요구</p> <p>- 학교환경 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 시책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함.</p>	<p>○ 수정반영</p> <p>- 제4조제1항 시장은 시교육감, 자치구청장 및 관계기관 등의 장에게 종합계획을 소관업무에 반영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○ 미반영</p> <p>- 제6조 예산지원을 의무규정으로 할 경우 다른 환경교육 기관·단체와 상대적인 특혜발생 가능성이 있어 미반영</p>
<p>기 타</p>	<p>○ 제3조제3항 수정</p> <p>- “~녹색서울시민위원회 조례에 환경교육분과위원회가 없으므로 정정</p>	<p>○ 제3조제3항 수정</p> <p>- “~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교육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.→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환경교육 관련 분과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.”</p>